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0. 2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10월 10일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10.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전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함.

(안 제3조제2항)

-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영등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안 제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민기)

-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문체계는 본문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영등포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세입·세출결산안과 별도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하여 통과의례적인 심의가 아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성상,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9 |
|----------|-----|

발의년월일: 2016년 10월 일

발 의 자: 김용범 의원 외 3 명

1. 제안이유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영등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